

# 기안용지

(전화: 731-6393)

시행상  
특별취급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개30321-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수신처 보존기간	준영구
시행일자	89. 4.

보조 기관	건설관리국장 전결	협조 기관
	주택개발과장 <i>[Handwritten mark]</i>	
	개발2계장 <i>[Handwritten mark]</i>	
기안책임자	심관송 (오천군)	

*[Handwritten signature]*  
 법조통제관 행정과장  
 법무담당관 (고시안심사실)  
*[Handwritten init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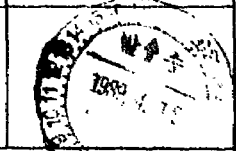
문서통제  
 1989. 4. 18  
 발송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명의

시장



제목 도시계획 (주택개발재개발구역) 변경결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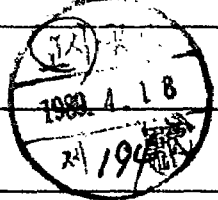
(제 1 안) 내부결재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결정된 아왕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권한의 위임)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방침 제615호(89.4.8)로 구역일부변경된 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규정에 의거 관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안 1부

· 주택개발재개발구역 변경결정도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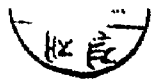
(제 2 안) 2789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게제의뢰
아래와 같이 관보게제의뢰마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재구분 : 고시
2. 게재건명 : 도시계획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
3.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첨부 고시문 사본 2부. 끝.
(제 3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도시개발과장
제목 도시계획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고시 보고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결정된 하왕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도서 1부. 끝.
(제 4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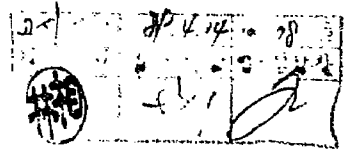
2790





수신	성동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도시계획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고시 통보
<p>1. 아왕제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        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고시하였기 그내용을 통보        하니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증명발급등 도시계획 관련 업무        처리에 착오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도시정비과로 통보할 것.</p>	
첨부	1. 고시문 사본 2부
	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도서 2부. 끝.
(제 5 안)	
수신	수신처참조 - 347
제목	도시계획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고시 통보
<p>1. 아왕제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        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통보합니다.</p>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도서 1부. 끝.
수신처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2791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 (주택개발재개발구역) 변경결정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결정된 하왕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택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9. 4.

서울특별시 장

가. 주택개발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내용

재개발구역명	위 치	면적 (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경내용	변경후	
하왕제2 구역	성동구 금호1 가168.165	143,896	(감) 2,249	141,713	일부해제
	번지일대		(증) 66		일부추가

나.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